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추가모집 계획

1. 사업개요

1) 사업량: 3개소 6명(선도농가 3, 귀농연수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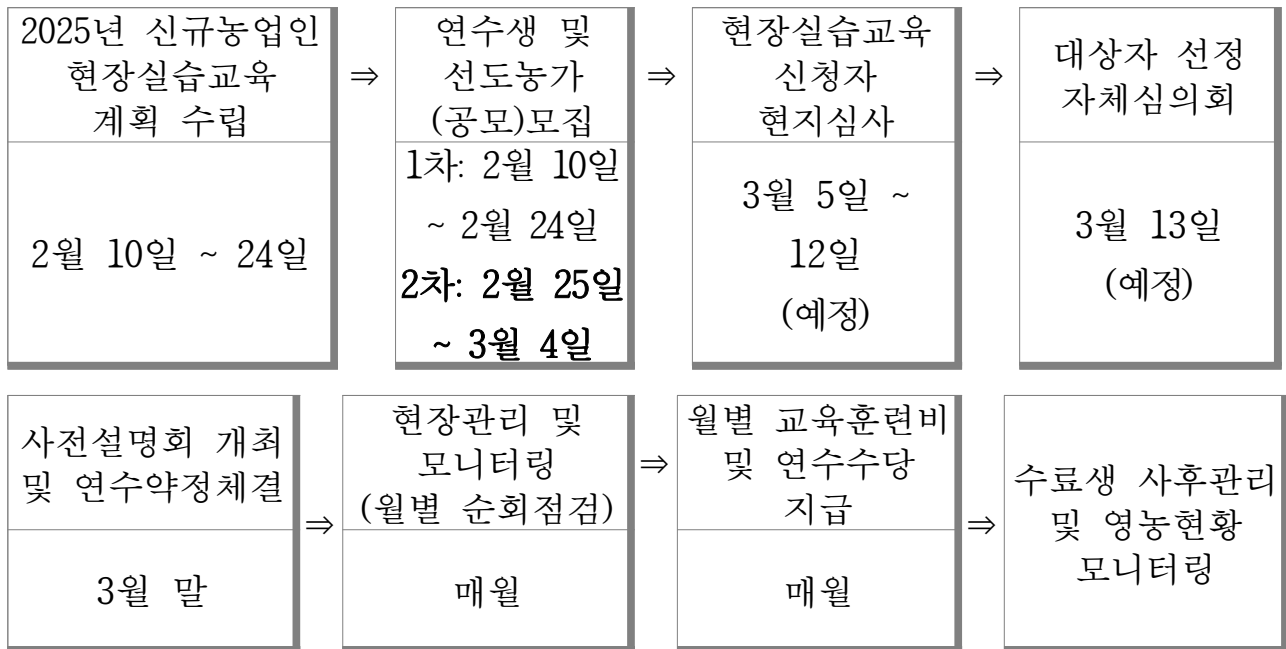
→ 선도농가 1명 추가모집 * 연수가능작목: 감귤류(노지, 만감류), 레몬

2) 사업기간: 2025년 3월~11월

※ 연수생 800천원/월, 선도농가 400천원/월(20일, 160시간 기준)

3) 사업내용: 선도농가(멘토)-연수생(멘티)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하여 연수생 수요작목 현장실습

2. 추진체계



* 실습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신청

- 신청대상: 선도농가 1명 * 연수가능작목: 감귤류(노지, 만감류), 레몬
- 신청기간: 2025. 2. 25.(화) ~ 3. 4.(화)
- 신청방법: 직접 방문(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선도농가)

자격 조건	<p>○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 우대 가능)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p>※ 해당 지역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서부센터 관리 가능 범위인 경우)</p>
제출 서류	<p>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p> <p>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p> <p>* 운영계획서: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p> <p>③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 선정 시 e+FD 시스템 입력 필요</p> <p>④ 보안서약서(붙임 9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서식)</p>

4. 운영계획

【대상자선정 및 약정체결】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 대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붙임 1)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 간 약정을 체결(붙임 9)하여 사업 추진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 약정체결은 3~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장 희망 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 회수
- 허위연수 적발 시 그 즉시 약정을 해지하며, 해당월부터 지원비 미지급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체결 추진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 단순노동(작업)을 지양하고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선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자가영농실습 등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월 160시간 이내
 - 자가영농 실습(일 4시간, 월 80시간 이내):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와 협의

※ 자가영농의 경우에도 선도농가 실습을 병행하여야 함

(예) 자가영농 오전 4시간, 선도농가 오후 4시간

- 주작목+부작목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가능(연수기간 중복불가)
- 1명의 선도농가에 최대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3명 이상 불가)
- 현장실습보고서(붙임 8)를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교육지원비 지급】

- 연수생에게는 매월 1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수당을 지급
- 교수수당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연수생 각각 계산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
 - (지원조건) 지원비는 연수생의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재료 등을 제공하는 조건임
 - * 단,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2만원(식비, 실습재료비 등 포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붙임 5)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붙임 11)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선도농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참고서식목록(선도농가용)】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붙임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붙임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붙임 4)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붙임 5)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붙임 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붙임 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붙임 1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붙임 11) 선도농가 교육지원비 청구서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 교재 등 구비여부	3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 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4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 관련 협력 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시스템 활용 등) - 여성농업인 여부	30		
합 계	100		
중 합 의 견			

[붙임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 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 연수가능지역		
④ 연수가능기간		
⑤ 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 기타 특이사항		
⑧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 여부

본인은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
 - ③ 연수가능지역: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⑤ 자기소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 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 시 별지에 작성 가능)
 -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현장실습교육의 연수 과정 및 연수 방법 등을 기재 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 있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⑧ 확인란: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 시 후보자의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⑥ 월별 실습사항: 연수가능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할 주요 현장실습사항 기재
- ⑦ 실습 기대효과: 연수가능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 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재
- ⑧ 확인란: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 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 지인 소개									
기대효과									

[붙임 5]

현장실습 보고서(시스템입력)

○ 사업개요

구분	이름	작목	계약기간	월 교육일 수	규모(m ²)
연수생					
선도농가					

○ 경영계획, 실천, 점검(To Do List)

* 연수생 작성

번호	경영계획	경영실천(창업접목)
1		
2		
3		
4		
5		

○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선도농업인	연수생

○ 농업경영 코칭

* 시군 담당자 작성

	담당자 확인 (서명)
2025년 월 일	

[붙임 7]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을 “갑”이라 하고, 선도농가 ()를 “을”이라 하며, 연수생 ()을 “병”이라 하며,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총칙) “을”은 “병”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병”은 “을”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을 무효로 한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허위연수 적발 등 “을”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4.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갑”은 “을”또는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③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또는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연수생과 선도농가) ① “병”은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실제 연수 내용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병”이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을”과 “병”간에 연수 과정 중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 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병”은 “을”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⑤ “병”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 “을”과 “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지급 중단,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갑”, “을”, “병”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갑”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또는 서명
“을”	선도농가 성명:	인 또는 서명
“병”	연 수 생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붙임 1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① 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 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 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총 연수기간		
④ 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 기타 특이사항		
⑦ 종합검토의견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하는 연수 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 * 추진상황 점검 시 연수생이 없을 경우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외출계 등)
- ⑦ 종합검토의견: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붙임 11]

()월 연수생 교육지원비 청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은행계좌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총 연수기간	~ (개월)	교육일수	(일)	
			교육시간	(시간)	
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교육 훈련 내용	
----------------	--

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에 따른 교육지원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연수생

(서명 또는 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사본(기 제출 시 생략)
2. 통장 사본
3.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 기간을 기입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